

제 45 조 및 제 46 조에 관한 공동 해석 선언

당사자는 민주주의 체제이다. 당사자는 그들의 공유 가치를 전 세계로 전파 하기 위하여 함께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. 이 협정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 · 인권 · 비확산과 테러에 대한 대처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 결의를 나타내는 징표이다. 따라서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당사자 간 이 협정의 이행은 대화, 상호 존중, 동등한 동반자 관계, 다자주의, 컨센서스 및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 기초한다.

당사자는 이 협정의 올바른 해석과 실제 적용을 위하여 제 45 조제 3 항의 “적절한 조치”라는 용어는 이 협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비례하는 조치라는 데 합의한다. 조치는 이 협정 또는 공동의 제도적 틀 안에 속하는 특정 협정과 관련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. 조치의 선택에서, 가용한 경우 국내적 구제 조치의 사용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협정의 기능을 가장 덜 저해하는 조치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.

당사자는 이 협정의 올바른 해석과 실제 적용을 위하여 제 45 조제 4 항의 “특별 긴급 상황의 경우”라는 용어는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한 이 협정의 중대한 위반의 경우를 의미한다는 데 합의한다. 중대한 위반은 국제법의 일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이 협정의 이행 거부 또는 이 협정상 핵심 요소의 특별히 심각하고 실질적인 위반이다. 당사자는 있을 수 있는 제 4 조제 2 항의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는 가용한 경우 관련 국제기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평가한다.

제 46 조와 관련하여, 조치가 공동 제도적 틀 안에 속하는 특정 협정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,
중재재판관들이 그 조치가 정당화되지 못하였거나 비례적이지 않았다고 판정할 경우, 중재패널
판정을 이행하는 절차와 관련해서는 그 특정 협정의 관련 분쟁 해결 절차를 적용한다.

제 12 조에 대한 유럽연합의 일방 선언

대한민국과 회원국의 전권 대표는 다음과 같은 일방적 선언에 주목 한다 :

유럽연합은 그 회원국들이 유럽연합 수준에서 조세 분야의 이러한 선정(善政)의 원칙에 동의한 정도까지만 제 12 조에 따라 구속된다는 점을 선언한다.
